

「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 사 경 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4. 3.20(목) 평창군수(자치행정과장)

나. 회부일자 : 2014. 4. 15(화)

다. 상정일자 : 2014. 4. 15(화) 제20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
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자치행정과장)

-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법령개정사항을 복무조례에 반영하고 2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를 위해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홍금숙)

- 본 조례는 평창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금번 주요개정 내용은 공무원 특별 휴가 중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임신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20년 이상 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재직 중 1회에 한하여 5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는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.

-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있고 명확한 내용전달을 위하여 연결조문 정비, 불필요한 문구삭제, 용어 순화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**【붙임】**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

##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공무원(이하“공무원””을 “지방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지방공무원법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지방공무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7조에 따라”로, “소속기관이 장”을 “소속 기관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선서는[별표 1]”를 “선서는 별표 1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공무원은[별표 2]”를 “공무원은 별표 2”로 한다.

제7조의 제목 “(당직및비상근무)”를 “(당직 및 비상근무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발생한”을 “발생하였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소속기관”을 “소속 기관”으로, “천재지변 기타”를 “천재지변, 그 밖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당직및비상근무자”를 “당직 및 비상근무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당직및비상근무”를 “당직 및 비상근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당직근무를 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”을 “제4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공무원(이하“출장공무원”이라 한다)은 당해”를 “공무원(이하 “출장공무원”이라 한다)은 해당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발생한 때에는 전화·전보 그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”을 “발생하였을 때에는 전화·전보,

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”으로, “복명하여야”를 “보고하여야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본문 중 “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”를 “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”으로, “관한여”를 “관하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장은 당해”를 “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장은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법 제30조의4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”을 “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“재외공무원복무규정(대통령령)”을 “「재외공무원 복무규정」”으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”를 “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, 그 밖의”로 한다.

제11조 중 “소속기관”을 “소속 기관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공무원증 규칙(총리령)”을 “「공무원증 규칙」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2항 중 “공무원연금법”을 “「공무원연금법」”으로, “제3항의 규정”을 “제3항”으로, “경우를”을 “경우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, “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”으로, “가산한다”를 “더한다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언지”를 “받지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제19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

공무원

제18조의2 중 “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제1항의”를 “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1항 중 “소속공무원”을 “소속 공무원”으로, “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”을 “않도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자에 대하여는 연2회이상”을 “공무원에 대해서는 연2회 이상”으로 하며,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제25조의2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.

제19조제4항 중 “없는 한”을 “없으면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“제18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8조에 따른”으로,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, “범위안”을 “범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“당해연도”를 “해당 연도”로, “당해”를 각각 “해당”으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차년”을 “다음 연”으로 한다. 제20조제2항 전단 중 “당해연도”를 “해당 연도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15일미”를 “15일 미”로, “월할계산”을 “월할 계산”으로, “소숫점이하일 경우 0.5일이상”을 “소수점 이하일 경우 0.5일 이상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부상외”를 “부상 외”로, “누계8시간을 연가1일”을 “누계 8시간을 연가 1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21조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1조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각호의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, “범위안”을 “범위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 일수”를 “제20조제3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소속공무원”을 “소속 공무원”으로, “범위안”을 “범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7일이상인”

을 “7일 이상인”으로 한다.

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기타”를 “또는 그 밖의”로,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근무”를 “공무”로, “검찰 기타기관에 소환할”을 “검찰,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,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

5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

6.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」 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

제22조제7호 중 “교통차단, 기타”를 “교통차단 또는 그 밖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8. 올림픽·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

제23조제1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, “경우에는[별표 3]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”을 “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출산 전후에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.

제23조제3항 본문 중 “여자공무원”을 “여성공무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,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.

제23조제5항 중 “한국 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의한”을 “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0항 중 “풍해·수해·화재등”을 “풍해·수해·화재 등”으로, “5일이내에”를 “5일 이내의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⑪ 군수는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직 중 1회에 한하여 5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.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을 따른다.

제25조의2의 제목 “(공무외의 국외여행)”을 “(공무 외의 국외여행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범위내에서 공무외”를 “범위에서 공무 외”로 한다.

제26조제1항 중 “지방공무원의영리업무의한계에관한규정(대통령령)에 의한 영리업무”를 “영리업무”로 한다.

제27조를 삭제한다.

제28조 중 “조례에”를 “조례에서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